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968호 2026.1.8.(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2호 202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적용 금리 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5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공람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호 2026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1호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구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공고 생략 대상에 서구복지재단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공고 생략 대상에 서구복지재단을 추가(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 장애인과, 전화 032)560-4902,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공고 생략 대상에 서구복지재단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공고 생략 대상에 서구복지재단을 추가(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과”를 “「지방공기업법」 및”으로,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을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복지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공고)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5조(위탁공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공기업법」 및 ----- ----- 따른 구 시설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복지재단---</p>

관계 조례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
5.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등의 수탁운영
6. 복지사각지대(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굴 및 지원 관련사항
7.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공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 추가(안 별표1)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5,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검암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20(검암동)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6-12(석남동)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18(마전동)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심곡동)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석남동)
단봉늘봄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25(왕길동)
아라누리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20(당하동)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연체 도서의 반납 활성화를 위한 대출 정지 페널티 완화 및 회수 불능 도서의 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용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정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도서 회수 불능 시 도서를 제적하는 근거를 구체화 함(안 제17조)
-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한 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755,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연체 도서의 반납 활성화를 위한 대출 정지 페널티 완화 및 회수 불능 도서의 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용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정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도서 회수 불능시 도서를 제적하는 근거를 구체화 함. (안 제17조)
- 폐기 또는 제적 자료에 대한 배포 근거를 신설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정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적처리 한다”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를 제적 처리한다”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적된 자료는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202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18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청구권자 총수 (A-B)	서명인 수	비고 (비율)
	계(A)	주민등록자	외국인				
인천 서구	548,648	546,384	2,264	554	548,094	45,675	1/12

※ 내국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적용 금리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35895호, 2025. 12. 9.)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예금 및 대출금리

2025.12.9.기준

(단위 : %)

금고	예 금			대 출		
	공금예금 (고정금리)	정기예금 (변동금리)		수시입출금식 (MMDA, 변동금리)	일시차입 (변동금리)	지방채 (변동금리)
		예치기간	금리			
하나은행	2.4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88	3.34	3.92	4.39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1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47			
		1년 이상 ~	4.8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35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 공고

가정동 5-92번지 일원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 36,689㎡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7. 10.

나.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사업추진단계시 착수일 및 준공일은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천마로13번길 10, 1층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032-560-459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3층)

7.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5.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18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청구권자 총수 (A-B)	서명인 수	비고 (비율)
	계(A)	내국인	외국인				
인천 서구	548,037	546,384	1,653	554	547,483	5,475	1/100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구청장

(단위: 명)

구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15%)	최소 서명인 수
	계(A)	내국인	외국인				
총계	541,383	539,735	1,648	553	540,830	81,125	
검암경서동	36,570	36,450	120	45	36,525	5,479	3,592
연희동	32,942	32,829	113	65	32,877	4,932	5,409
청라1동	23,965	23,900	65	24	23,941	3,592	2,708
청라2동	36,958	36,876	82	21	36,937	5,541	1,603
청라3동	28,073	27,998	75	19	28,054	4,209	1,785
가정1동	33,050	32,975	75	35	33,015	4,953	1,691
가정2동	13,984	13,967	17	7	13,977	2,097	2,383
가정3동	7,641	7,624	17	7	7,634	1,146	2,077
신현원창동	24,614	24,560	54	29	24,585	3,688	1,595
석남1동	18,077	17,957	120	28	18,049	2,708	4,953
석남2동	10,700	10,634	66	17	10,683	1,603	2,097
석남3동	11,916	11,883	33	17	11,899	1,785	1,146
가좌1동	11,297	11,207	90	28	11,269	1,691	3,688
가좌2동	15,893	15,874	19	10	15,883	2,383	5,409
가좌3동	13,861	13,801	60	20	13,841	2,077	4,932
가좌4동	10,639	10,600	39	10	10,629	1,595	4,209
검단동	27,861	27,703	158	46	27,815	4,173	5,368
불로대곡동	33,840	33,778	62	14	33,826	5,074	3,226
원당동	18,635	18,600	35	17	18,618	2,793	2,653
당하동	35,813	35,712	101	29	35,784	5,368	4,173
오류왕길동	21,535	21,436	99	29	21,506	3,226	5,074
마전동	17,698	17,658	40	13	17,685	2,653	2,793
아라1동	33,896	33,847	49	12	33,884	5,083	5,083
아라2동	21,925	21,866	59	11	21,914	3,288	3,288

※ 산정된 서명인 수 81,125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8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 명)

구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 소 서명인 수
	계(A)	내국인	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60,923	60,776	147	45	60,878	12,176	
청라1동	23,965	23,900	65	24	23,941	4,789	609
청라2동	36,958	36,876	82	21	36,937	7,388	609
서구 나선거구	92,383	91,956	427	130	92,253	18,451	
석남1동	18,077	17,957	120	28	18,049	3,610	923
석남2동	10,700	10,634	66	17	10,683	2,137	923
석남3동	11,916	11,883	33	17	11,899	2,380	923
가좌1동	11,297	11,207	90	28	11,269	2,254	923
가좌2동	15,893	15,874	19	10	15,883	3,177	923
가좌3동	13,861	13,801	60	20	13,841	2,769	923
가좌4동	10,639	10,600	39	10	10,629	2,126	923
서구 다선거구	79,289	79,126	163	78	79,211	15,843	
가정1동	33,050	32,975	75	35	33,015	6,603	793
가정2동	13,984	13,967	17	7	13,977	2,796	793
가정3동	7,641	7,624	17	7	7,634	1,527	793
신현원창동	24,614	24,560	54	29	24,585	4,917	793
서구 라선거구	69,512	69,279	233	110	69,402	13,881	
검암경서동	36,570	36,450	120	45	36,525	7,305	695
연희동	32,942	32,829	113	65	32,877	6,576	695
서구 마선거구	103,119	102,804	315	90	103,029	20,606	
청라3동	28,073	27,998	75	19	28,054	5,611	1,031
당하동	35,813	35,712	101	29	35,784	7,157	1,031
오류왕길동	21,535	21,436	99	29	21,506	4,302	1,031
마전동	17,698	17,658	40	13	17,685	3,537	1,031

구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 자 (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최 소 서명인 수
	계(A)	내국인	외국인				
서구 바선거구	136,157	135,794	363	100	136,057	27,212	
검단동	27,861	27,703	158	46	27,815	5,563	1,142
불로대곡동	33,840	33,778	62	14	33,826	6,766	1,142
원당동	18,635	18,600	35	17	18,618	3,724	1,142
아라1동	33,896	33,847	49	12	33,884	6,777	1,142
아라2동	21,925	21,866	59	11	21,914	4,383	1,142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선거구 안에 3개 이상의 동이 있는 경우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